


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
경제 관계장관회의 겸
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
25-8-1
(공개)

 역동경제로
서민·중산층 시대 구현!

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

2025. 3. 5.

관 계 부 처 합 동

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(요약)

I 추진 배경

□ 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대응한 **적극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**

- ① 각 국은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**국가단위 총력전**
- ② 중국 등의 대규모 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에서도 **선후발 국가간 격차 축소**
- ③ 1.20일 美 신행정부 출범 계기로 고율 관세부과 등 **보호무역주의·자국우선주의 경향도 강화**

□ 우리나라도 반도체저리대출*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이나 **작은 규모, 금융규제 준수, 대출중심**이라는 한계

*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(3년간 17조원) ☞ (예) 반도체 소부장 영위 중견기업 A사는 7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2.64%에 이용(일반대출 대비 약 1.5%p 이상 낮음)

- ① **(규모) 반도체(17조원 프로그램) 외 산업의 경우 초저리대출 등 자금지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**
- ② **(금융규제준수) 금융규제 상 여신한도(계열, 국가, 신용도별) 및 위험가중치(RWA) 부담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*이 곤란**

* ①투자의 RWA는 통상 250~400%로 대출에 비해 3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간주

②투자 결과에 대한 감사부담으로 정책금융기관 실무진의 적극적 취급에 한계

- ③ **(장기투자부족) 민간매칭 높은 정책펀드는 투자기간이 충분치 않아(5년↓) 기술·초장기투자 부족 ⇒ 인내자본 확충 필요**

⇒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대규모로 투자·대출·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'첨단전략산업기금' 신설**

II 주요 내용

◆ **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“첨단전략산업기금” 신설**
 ※ 동 자금을 기초로하여 산은 본체·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가능

1 (대상) 첨단전략산업·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(대·중견·중소 전반) 및 관련 인프라·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

*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방산, 백신, 로봇, 수소, 미래차, AI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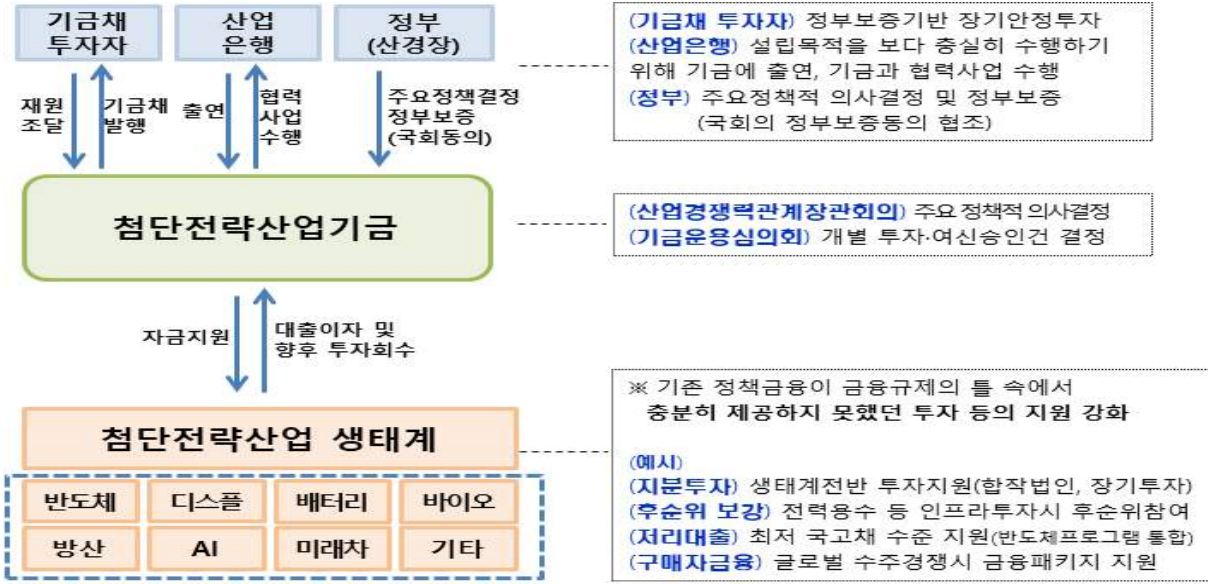
2 (재원) 정부 보증 기금채 +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

3 (지원방식) 저리대출 외에도 **지분투자*·후순위 보장**** 등 종합적 지원

* 대규모 공장설비투자(Fab, MRO yard 등)를 위한 SPC에 기금이 지분투자
 ** 전력·용수 등 초장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장하고 산은 본체·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

4 (지원체계) 주요정책 사항은 **산경장**에서 논의, 개별 자금지원 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**기금운용심의회**를 통해 결정

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 】



III 향후 계획

- 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 제출
 - ☞ 법 통과 후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**조속히 지원 개시**

순 서

I. 검토배경	1
II.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	3
III.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	4
IV. 향후계획	6

I. 검토배경

□ **첨단전략산업 경쟁격화에 대응**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**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**한 상황

①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**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**으로 각 국은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**국가단위 총력전**

② 중국 등의 대규모 투자*로 초격차를 유지하던 산업**에서도 **선후발 국가간 격차 축소**

* 세계 R&D투자 2000대 기업 중 한국은 54개(13년) → 40개(23년)로 줄어드는 동안 중국기업의 수는 119개(13년) → 524개(23년)로 급증 (대한상의)

③ 1.20일 美 신행정부 출범 계기로 각국의 **고율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주의*·자국우선주의 경향도 강화**되는 상황

* 미국은 3.12일부터 수입 철강·알루미늄에 25% 관세부과, 4.2일 국가별 상호 관세조치 및 자동차·반도체·의약품 등의 구체적 세율발표 예정(25% 이상 전망)

□ 우리나라도 반도체저리대출*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중 이나 **작은 규모, 금융규제 준수, 대출중심이라는 한계**

*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(3년간 17조원) ☞ (예) 반도체 소부장 영위 중견기업 A사는 700억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2.64%에 이용(일반대출 대비 약 1.5%p 이상 낮음)

① **(규모) 반도체(17조원 프로그램) 외 산업의 경우 초저리대출 등 자금지원 소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**

② **(금융규제준수) 금융규제 상 여신한도(계열, 국가, 신용도별) 및 위험가중치(RWA) 부담 등으로 충분한 투자지원*이 곤란**

* ①투자의 RWA는 통상 250~400%로 대출에 비해 3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간주
②투자 결과에 대한 감사부담으로 정책금융기관 실무진의 적극적 취급에 한계

③ **(장기투자부족) 민간매칭 높은 정책펀드는 투자기간이 충분치 않아(5년↓) 기술·초장기투자 부족 ⇒ 인내자본 확충 필요**

⇒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대규모로 투자·대출·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'첨단전략산업기금' 신설**

미국	일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도체 및 과학법(CHIPs 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527억달러 (제조시설 390억 달러 + R&D 137억달러) - 투자세액공제 25% 별도 도입 · 인플레이션감축법(IRA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차전지 공장의 투자세액공제 최대 30% - 핵심부품 및 광물생산비용 10% 세액공제 · 자동차·반도체·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 수입품 고율관세 부과계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산업경쟁력 강화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조금 6조엔 (시설투자액의 1/3, 기술개발액의 1/2) -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(10년간 법인세액의 20~40% 공제) · 39조엔 규모 종합경제대책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I·반도체 산업 10조엔 지원 등 · 민관합작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설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2.8월 정부+8개 민간기업 공동 출자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- 정부예산 출자 및 라피더스보유 채무이자에 대한 지급보증 등 지원
중국	기타 국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중국제조 2025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핵심부품과 재료 국산화율을 30%→70% 상향하기 위한 청사진 - 반도체분야에만 562조원 펀드투자 - SMIC(지분 31.1%)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여 투자확대 · 이차전자·디스플레이 기업 등에 각종 보조금 지급(CATL 8.1억달러, BOE 4.2억달러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독일) 독일 최대 반도체업체 인피니언의 공장신설에 9.6억달러 보조금 승인 · (프랑스)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일부 현금 페이백 · (캐나다) 청정기술 관련 투자액의 최대 30%를 현금으로 환급 중

II.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요

■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 “첨단전략산업기금” 신설

※ 동 자금을 기초로하여 산은 본체·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가능

① (대상) 첨단전략산업·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(대·중견·중소 전반)* 및 관련 인프라·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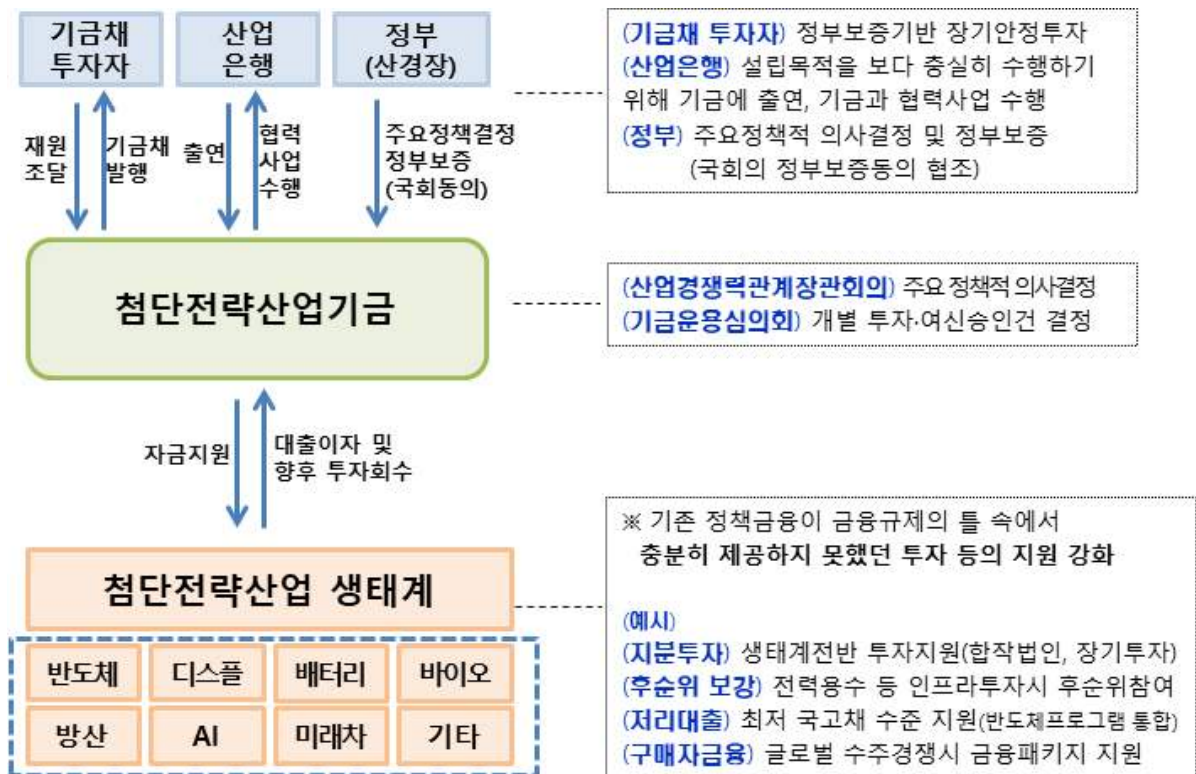
*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방산, 백신, 로봇, 수소, 미래차, AI 등

② (재원) 정부 보증 기금채 + 산은 자체재원 활용 기금 출연 병행

③ (지원방식) 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·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

④ (지원체계) 주요정책 사항은 산경장에서 논의, 개별 자금지원 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

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개요도 】



Ⅲ.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

◇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지분투자, 후순위출자 및 초저리대출이 가능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

⇒ 산업은행의 본 업무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 ☞ 일종의 '부스터샷' 기능

1

자금지원 대상

□ 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**첨단전략산업** 및 **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** 영위기업 + **기금 지원취지 고려 시행령 지정**

①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(방산, 로봇)* (첨단전략산업법 11조)

* (방산, 로봇)을 추가하도록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('24.12월)

② 반도체, 이차전지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백신, 수소, 미래형이동·운송수단, 인공지능 (조세특례제한법 10조)

③ 그 밖에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업종

*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협의하여 지정

□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·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

2

기금규모 및 재원조달

□ (기금규모) 5년간 (최대) 50조원 (※ 기금운용기간 : 20년)

○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(3년 17조원) 중 '25년분(4.25조원)은 예정대로 운영하고 남은 2년분은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

* 반도체산업에는 2년간 남은 12.75조원에 더해 기금 종료시점까지 추가자금지원

□ (재원마련) 정부보증채(기본채원) + 산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(경비, 이자비용 등) 등

○ 자금소요·채권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국회의 정부보증 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발행*

* 자본금 성격이 아닌만큼 재원활용(투자·대출 완료) 후 상환(영구적 여력증가 없음)

○ 투자기간 동안 기금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이 기금에 출연

* 산은 본연의 임무를 더욱 공격적으로 수행하는 차원으로 ①산은 업무에 '기금에의 출연'을 추가하고 ②기금 재원으로 산은이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

3

자금지원 방식

□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**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**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적극 지원

① (지분투자) 특히 시장성 차입·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·중견 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여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

-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및 지원기업과의 합작법인*(JV, SPC)

* 예: 대규모 공장설비(Fab, MRO yard 등)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, 기금(또는 기금출자 펀드)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(의결권 미행사 원칙)

-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*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·인프라투자에 집중토록 설계

* 현행 정책펀드는 민간자금 매칭비중이 높아(예: 혁신성장펀드 민간비중 70% 이상)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

② (후순위보강) 전력·용수 등 초장기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장하고 산은 본체·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 시행

- 일정수준(7.4%) 후순위 보장시 은행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*받을 수 있게 되어 은행·산은 본체 출자부담 경감

* 통상 투자의 RWA는 통상 250~400%이나 정부의 일정수준 기여시 100% 적용가능

③ (초저리대출)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 투자·R&D 등 자금*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 가능

* 단순 운영자금 또는 기존차입금 상환목적 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

- 은행·산은과의 공동대출(신디케이션)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 확대

④ (구매자금용)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 제공

(“산업기술력은 좋은데 금융지원 없어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 해소”)

* 예: 방산 등 수주산업은 글로벌 경쟁국과 조(兆)단위 수주경쟁 중 ☞ 구매국에서 금융패키지를 원하고 있으나 산은·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·금리에 한계

4

기금운용심의회

□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·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* 설치 및 운영

* 위원 구성(안, 총 7명) :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명, 기재부 장관·산업부 장관·금융위원장·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, 산은 회장이 지명하는 산은 임직원 1명

□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,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’를 통해 결정

○ 기금운용심의회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산경장에 보고

5

면책규정

□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토대로 기금을 통해 자금지원한 경우로서, 고의·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·운용 업무처리시 면책 → 적극적인 운용 유도 (기안기금 등 전례에 따름)

IV. 향후계획

□ 3월 중 산은법 개정안 및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☞ 법통과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 개시